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집체협약
서류 작성 가이드

TIPA 스타트업사업실

구분	문서명	확인사항
필 수	0.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한글)	- 보완내용 있을 시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1.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작성 * 계좌개설 필요(기존계좌 가능), 직인날인
	2.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직인날인 * 연구책임자는 서명 가능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 각각 작성하여 한파일로 업로드, 서명 대체 가능
	4. 정보제공 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신청 시 양식과는 다른 양식임, 계좌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 계좌개설 필요(기존계좌 가능), 직인날인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직인날인
	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 각각 작성하여 한파일로 업로드, 서명 대체 가능
	7.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RCMS) * 회원가입 필수(www.rcms.go.kr)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작성 * 계좌개설 필요(기존계좌 가능), 기관별 각각 작성, 직인 날인
	8. 평가의견 반영내역서 (한글)	-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9.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직인날인
해당시 첨부	10.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해당시
	11. 외부기술도입 현물산정 신청서	- 해당시
	12.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 해당시
	13.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 해당시
	1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	- 해당시

1) 필수서류
- **0~9** 번 작성가이드에 따라 필수 작성 후 제출

2) 해당 시 첨부
- **10~14**번 해당 시 작성 후 제출
- **12**번, **13**번 연구시설장비비(**3000**만원,**1**억원 이상)
- **14**번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통합 규정으로 접속 공통서식 다운가능.

필수 첨부 자료

0) 수정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주관기관만 작성)

수정연구개발계획서 본문1(한글)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서 평가 종합의견 중 보완의견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및 수정 - 임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전년도 또는 타부처 등)은 인정 불가 - 수정내용은 평가의견에서 요구한 내용만 가능하며 이외의 내용을 수정 시 임의수정 으로 협약 불가능 - 수정 내용은 "8) 평가의견 반영내역서" 에 표기 - 수정사항 반영 시 수정된 사항은 파랑색 삭제된 사항은 ~~빨간색(삭제선)~~으로 표기 한다. ※ **평가위원 종합의견을 반드시 반영 할 것 (변경 부분 파랑색으로 색 표시)**

1) 신용상태 조회 · 정보활용 동의서 (주관,공동,위탁 모두 작성)

[별지1-1]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SMTECH)시스템 동의 시 직인/서명 생략가능, (IRIS)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 정보활용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		대표자	주관	
	공동			공동	
	위탁			위탁	

1. 신용상태 조회 동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전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

본인은 아래의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제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전문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전문기관이 소관부처를 대신하여 청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기관(기업)	대표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동의 □ 비동의 (인)	□ 동의 □ 비동의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 동의 □ 비동의 (인)	□ 동의 □ 비동의 (인)
위탁연구개발기관	□ 동의 □ 비동의 (인)	□ 동의 □ 비동의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해당양식은 비영리 및 공사 작성 제외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전략형, 서비스**R&D** 등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
- 신청 시 기재한 과제명, 주관기관명 기재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 정보 기재

- 사업기간 시작일(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해당하는 기관별 동의 표시 필수
- 기관(기업), (해당 시) 공동, 위탁 동의 체크 후 직인날인 필수, 대표자 동의 체크 후 직인날인 필수

2)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주관기관만 작성)

[별지2-2]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협약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개발·생산·판매중이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시 협약 해약, 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 (인)
대 표 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전략형, 등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
- 신청 시 기재한 과제명, 주관기관명 기재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기관(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이름 작성 후 직인날인 필수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주관,공동,위탁 모두 작성)

[별지2-9]청렴서약서

(※ (SMTECH)시스템 동의 시 직인/서명 생략가능, (IRIS)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업로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국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자체의 연구개발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⑦ 본 회사의 대표자(또는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⑧ 본인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제재, 민형사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관)명 : ㈜0000	■ 동의 □ 비동의	(인)
	대표자 : 김○○	■ 동의 □ 비동의	(인)
	연구책임자 : 김○○	□ 동의 □ 비동의	(인)
	참여연구원 : 김○○	□ 동의 □ 비동의	(인)
	참여연구원 :	□ 동의 □ 비동의	(인)
	참여연구원 :	□ 동의 □ 비동의	(인)
	참여연구원 :	□ 동의 □ 비동의	
	참여연구원 :	□ 동의 □ 비동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수행기관별로 동의서 작성(전체 참여연구원 동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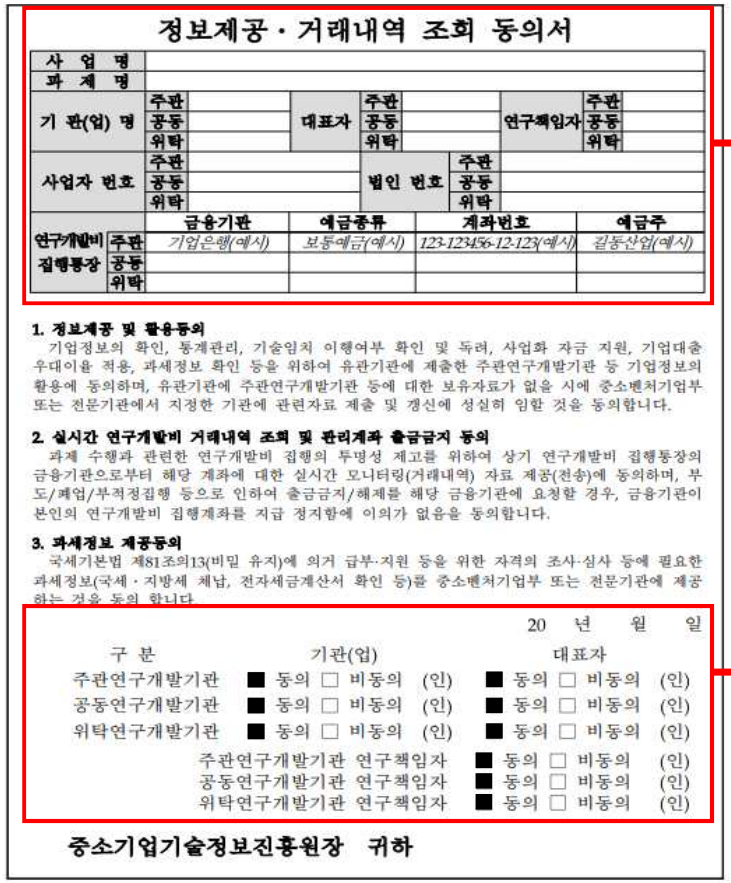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전원 작성
-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 참여연구원 전원 이름 기재 및 서명 (동의 체크 필수)
- 기채용된 신규채용 인력도 명단에 포함
 (신규 인원이 집체 협약 시점에 고용된 상태이나, 사업기간 시작일 이후 채용된
 인원인 경우 명단에 미포함)
- 각각 작성하여 한파일(**PDF**)로 업로드

4)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주관기관만 작성) (신청 시 양식과는 다른 양식임, 계좌입력)

[별지2-1]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 (SMTECH)시스템 동의 시 직인/서명 생략가능, (IRIS)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업로드)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		대표자	주관		연구책임자	주관	
	공동			공동			공동	
	위탁			위탁			위탁	
사업자 번호	주관		법인 번호	주관				
	공동			공동				
	위탁			위탁				

		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연구개발비 집행통장	주관	기업은행(예시)	보통예금(예시)	123-123456-12-123(예시)	길동산업(예시)
	공동				
	위탁				

1. 정보제공 및 활용등의

기업정보의 확인, 통계관리, 기술임치 이행여부 확인 및 독려,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대출 우대이율 적용, 과세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기업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실시간 연구개발비 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계좌 출금금지 등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연구개발비 집행통장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거래내역) 자료 제공(전송)에 동의하며, 부도/폐업/부적정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금금지/해제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본인의 연구개발비 집행계좌를 지급 정지함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3. 과세정보 제공등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의거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국세·지방세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기관(업)	대표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동의 □ 비동의 (인)	■ 동의 □ 비동의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 동의 □ 비동의 (인)	■ 동의 □ 비동의 (인)
위탁연구개발기관	■ 동의 □ 비동의 (인)	■ 동의 □ 비동의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동의 □ 비동의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동의 □ 비동의 (인)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동의 □ 비동의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전략형, 등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
- 신청 시 기재한 과제명, 주관기관 정보 기재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 정보 기재
- 사업비 집행통장은 일반 보통예금 계좌만 가능
- 기존 계좌 사용 가능하나 계좌 잔액 **0**원으로 조정 필수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해당하는 기관별 동의 표시 필수
- 기관(기업), (해당 시) 공동, 위탁 동의 체크 후 직인날인 필수, 대표자, 연구책임자 동의 체크 후 직인날인 필수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주관기관만 작성)

[별지2-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 목적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의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②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③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등

□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① 중소벤처기업부
②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③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 보유·이용 기간

○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위의 제공항목을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 ○○○ (인)
대표자 : ○○○ (인)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필수적 정보 동의 체크 후 기관(기업), 대표자 직인날인 필수

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관,공동,위탁 모두 작성)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에 서명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참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된 정보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 본인 확인, 식별, 신용(제부)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전달 :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관리 : 경력, 최종 학력, 급여, 급여지급 계좌번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최종학력, 전자우편주소, 경력, 급여, 급여지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평가, 기술료 납부 등의 최종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신용조회·검토 및 사업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평가, 기술료 납부 등의 최종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② 국세청 ③ 기술보증기금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⑤ 우리은행 ⑥ 전국은행연합회 ⑦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TIS) ⑧ 기업은행	⑨ 하나은행 ⑩ 지정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법인 중 지정) ⑪ 한국기업데이터 ⑫ 한국연구재단 ⑬ 창업진흥원 ⑭ 창업보육협회 ⑮ 발명진흥회 ⑯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⑰ 한국산학연협회

<계속>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2)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목적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중기부 R&D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MTECH+ 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4. 4月) 후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우리은행)	제공 목적	기정원과 우리은행이 "디딤돌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창업성장기업들에게 창업성장에 필요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 성공화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업성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의 디딤돌 역할 수행하기 위해 제공
	제공 항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기업 정보 (SMTECH+ 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5. 2月) 후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목적	R&D 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자금 접근성을 제고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범 금융권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MTECH+ 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5. 11月) 후 1년으로 하며, 양 기관이 협약 종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체 페이지 동의함 체크**
- **동의함 체크 누락 되지 않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구분	기관명	수행 역할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관	개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0000	주관	대표자	0000 서명 0				
2	0000	공동	연구책임자	0000 서명 0				
3	0000	위탁	참여연구원	0000 서명 0				
4								
13								
14								
15								
16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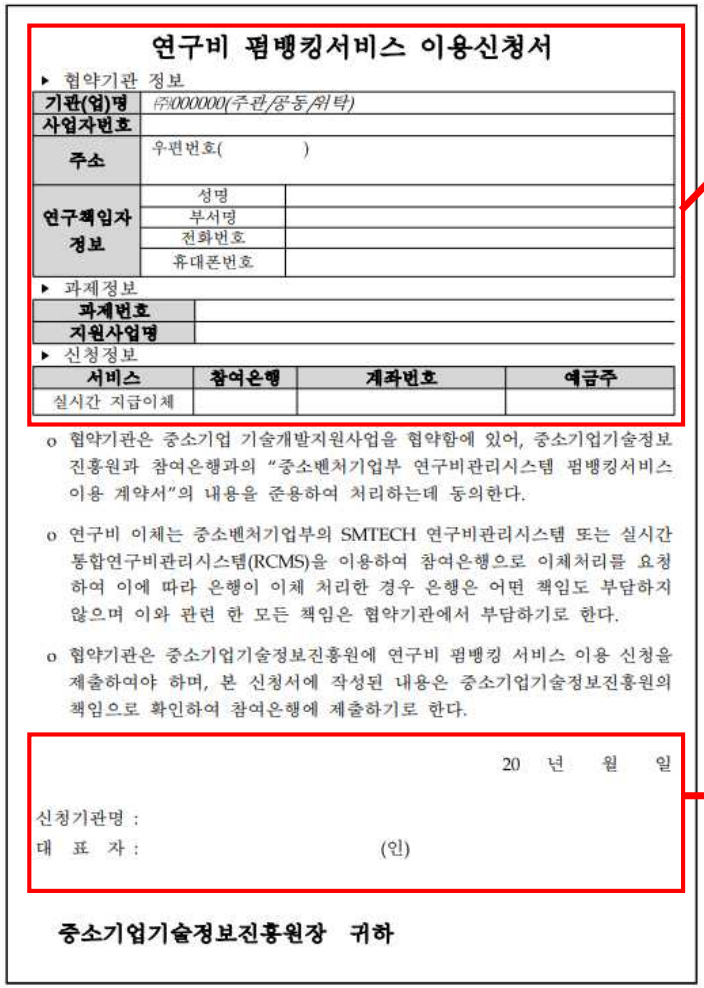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전원 작성
- 기관별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전원의 이름 기재 및 서명 필수 (성명 옆, 동의 표시 사이)
- 기재된 참여연구원 전원 동의 표시 확인

(기채용된 신규채용인력도 명단에 포함 - 신규 인원이 집체협약 시점에 고용된 상태이나 사업기간 시작일 이후 채용된 인원인 경우 명단에 미포함)

- 주관, 공동, 위탁기관별 각각 작성하여 한파일(PDF)로 업로드

※ 오프라인 작성 시 서명 혹은 직인 날인 必

7)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RCMS) (주관, 공동, 위탁 모두 작성)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 협약기관 정보

기관(업)명	*㈜000000(주관/공동/위탁)*	
사업자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구책임자 정보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과제정보

과제번호	
지원사업명	

▸ 신청정보

서비스	참여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실시간 지급이체			

o 협약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협약함에 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참여은행과의 "중소벤처기업부 연구비관리시스템 펌뱅킹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는데 동의한다.

o 연구비 이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SMTECH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이용하여 참여은행으로 이체처리를 요청하여 이에 따라 은행이 이체 처리한 경우 은행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 한 모든 책임은 협약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o 협약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연구비 펌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책임으로 확인하여 참여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대 표 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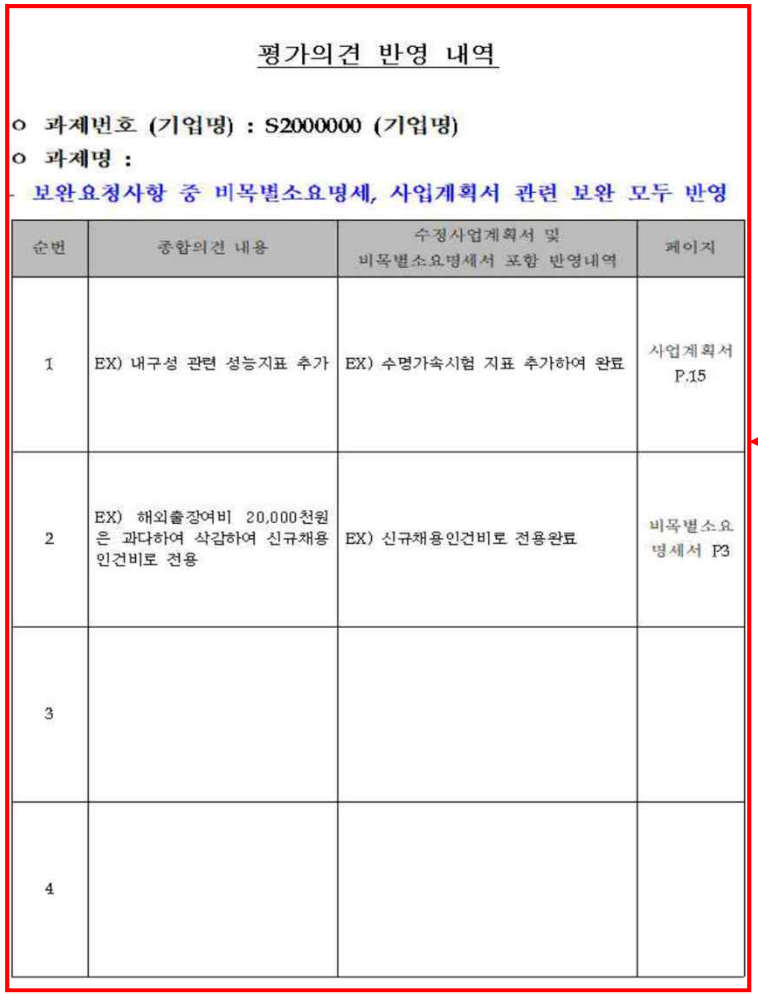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수행기관별 작성 필요

- 협약기관 정보 작성
- 연구책임자 정보 작성
- 과제정보 작성 (과제번호, 지원사업명 작성)
- 신청정보 내 기입 내용은 '신용상태 정보제공 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에 기재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기재
- 주관, 공동, 위탁기관별 각각 작성하여 한파일(PDF)로 업로드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기관(기업), (해당 시) 공동, 위탁 직인날인 필수, 대표자 직인날인 필수

8) 평가의견 반영내역서 (한글) (주관기관만 작성)



평가의견 반영 내역

○ 과제번호 (기업명) : S2000000 (기업명)

○ 과제명 :

- 보완요청사항 중 비목별소요명세, 사업계획서 관련 보완 모두 반영

순번	종합의견 내용	수정사업계획서 및 비목별소요명세서 포함 반영내역	페이지
1	EX) 내구성 관련 성능지표 추가	EX) 수명가속시험 지표 추가하여 완료	사업계획서 P.15
2	EX) 해외출장여비 20,000천원은 과다하여 삭감하여 신규채용인건비로 전용	EX) 신규채용인건비로 전용완료	비목별소요명세서 P3
3			
4			

- 평가의견 중 협약시 보완 사항 내용 반영 및 수정내용 작성
- 반드시 해당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정 완료 해야하며, 미반영 시 협약 체결 불가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상 수정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하며,
 보완 사항 외 내용 수정은 불가함.

9)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주관, 공동만 작성)

[별지2-5]경상기술료 납부계획

(※ (SMTECH)시스템 작성 시 직인/서명 생략가능, (IRIS)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업로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년 (개발종료 해당년)	()년 (개발종료 후 1년)	()년 (개발종료 후 2년)	()년 (개발종료 후 3년)	()년 (개발종료 후 4년)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100)						
예상 경상 기술료	연도별 예상 정률기술료 금액 (백만원)						
	예상 정률기술료 총액 (백만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점유비율 및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추후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며, 고의적인 매출 위·변조 등의 경우 협약위반에 따른 R&D참여제한(全부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 대표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협약기관 정보 작성 (예상 정률 기술료 제외하고 모두 작성)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개발종료 해당 년부터 **5**년 후까지 예상 제품 점유비율 작성
- 본문**2** (**IRIS**시스템 입력 값) 맨 하단 제품점유비율과 반드시 값이 일치하도록 작성 (소수점 까지 반드시 일치)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기관(기업), (해당 시) 공동 직인날인 필수, 대표자 직인날인 필수

해당 시 첨부 자료
(10번, 14번 예시)

10)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채용 예정 기관 모두 작성)

[별지2-10]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SMTECH)시스템 등의 시 직인/서명 생략가능, (IRIS)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업로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				
과 제 명	~~ 개발				
기관(업) 명	(주)0000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청년인력 여부*
	홍길동 (예시)	20 . 3. 10	석사	기계공학	O
	채용예정 (예시)	20 .5 월예정	석사	전자공학	X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 청년인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군 복무 기간 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023 년 n 월 n 일

별첨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채용 완료 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기관(업) 명 : (주)0000 대표자 : 김00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전략형, 서비스**R&D** 등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
- 신청 시 기재한 과제명, 주관기관명 기재

-기채용 인원인 경우(공고일(**22.12.30.**) 기준 **6**개월 이내 채용인원)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채용 예정인 경우
- 성명: 채용 예정, 입사일: **22**년 **n**월 예정 등 예시와 같이 예정으로 작성

- 청년(만 **34**세 이하)
-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도 군 복무기간 비례 적용 시 해당 기간만큼 인정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기관(기업), (해당 시) 공동, 위탁 직인날인 필수, 대표자 직인날인 필수

1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 (해당 시)

[별지2-8]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해당시 기관별 작성)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년 월)		
	1차년도	20 . . . – 20 . . . (년 월)		
	n차년도	20 . . . – 20 . . . (년 월)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전략형, 서비스**R&D** 등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
- 신청 시 기재한 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기재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연차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연구실운영비 (금액) 에 대한 내용 작성
- 세부적인 품목 및 단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
- 협약시 미제출 시 연구실운영비에 대해 정산 불인정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비 조정양식에 연구실 운영비 계상 하였으면 작성 필수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차년도				
품목명				
품목명				
n차년도				
품목명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사후 반영 불가하며,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ㅇ ㅇ ㅇ (직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사업기간 시작일 (집체 협약 일자**X**, 모든 서류의 일자는 사업기간 시작일로 일치)
- 기관(기업), (해당 시) 공동, 위탁 직인날인 필수, 연구책임자 직인날인 필수

사업비 조정 양식

- 사업비 조정 양식 (Excel)

사업비 조정 양식 (Excel)	- 확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반영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정하여 작성 - **평가의견 (사업비 관련) 반영한 비목별 예산 확정하여 작성** - **위 예산 총액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양식 작성** - **Excel 파일 작성 필수, 노란색 표시 칸은 모두 작성 필수** - **집체협약 개최 안내문 자료의 필수 계상 항목이 계상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사업비 작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SMTECH(www.smtech.go.kr) -> 정보마당->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 2023년 조회 -> 통합규정-> 관리지침 본문파일확인

1) 사업비 총괄표

노란색 칸을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시트 확인 필수)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제번호	
기업협약담당자명		담당자번호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사업비 분담내역

사업비 분담내역

연차	정부출연금(A)	민간부담금 (현금) (B)	민간부담금 (현물) (C)	현금사업비 (A+B)	총 사업비 (A+B+C)
1차년도	125,000			125,000	125,000
비율(%)	100.00%	0.00%	0.0%		
2차년도	250,000			250,000	250,000
비율(%)	100.00%	0.00%	0.00%		
3차년도	125,000			125,000	125,000
비율(%)	100.00%	0.00%	0.00%		
합계	500,000	-	-	500,000	500,0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비율은 80% 이내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이어야 함

2. 검증

연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검증
1차년도	적절
2차년도	적절
3차년도	적절

☆ 작성시 유의사항 ☆

1. 노란색 색 부분만 작성

2. 연차별 사업비 비율이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 후 하단의 연차별 세부 사업비 내역 작성

3.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20%이상이어야 하며,
기관부담금(현금)은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이어야함.
(= 기관부담금(현금)은 정부출연금+기관부담금(현금+현물)의 최소 2% 이상이어야함)

1) 사업비 총괄표

노란색 칸을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3-1 인건비 작성여부★(엑셀 오른쪽에 있습니다.)

3-1 인건비 작성필요!!!

과제번호	-	기업명	

0. 연구개발비 구성

정부출연금, 기관부담금 비율은 8:2

기관부담금 현물, 현금 비율은 9:1까지 가능함.

(단위:천원)

차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천원)			소 계					합계
	현금	비율	현금	비율	현물	기관부담금 합계	현금	비율	현물	비율	
1	125,000	79.61783439	10,000	31.2500	22,000	32,000	135,000	85.99%	22,000	14.013%	157,000
				20.382%	적절	적절					

1. 연구개발비 분담내역(작성필요) *공동, 위탁은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천원)

차수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검증결과 (적절, 부적절)
			현금	현금	현물	계		
1	주관연구개발기관	0				-	-	부적절
1	공동연구개발기관(1)					-	-	적절
1	공동연구개발기관(2)					-	-	적절
1	위탁연구개발기관(1)					-	-	적절
1	위탁연구개발기관(2)					-	-	적절
합계			-	-	-	-	-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의 20%이상 계상**
 - **(정부출연금)*0.25<=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민간부담금 현금은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의 **10%이상계상** (총사업비의2%이상)

- 기관별사업비 분담내역 작성(주관/공동/위탁)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 는 현물계상 불가
- 기관별사업비 분담내역 합계는 상단의 총금액과 일치 해야 함.

1) 사업비 총괄표

3.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작성필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도 동일하게 작성요망(변경된 비목이 많으므로 주의하세요, 우측 인건비 상세내역 필수 작성)

(단위:천원)

차수	구분	기관명	구 분	비목		현금		현물		총계		주요 검토결과 (적절, 부적절)	
						현금(천원) (A)	비율 (A/C)	현물(천원) (B)	비율 (B/C)	소계(천원) (C)	총연구개발비대비 비율		
1	주관연구 개발기관	0	직접비	인건비	기존인력인건비					-	0.00%		
					신규인력인건비					-	0.00%		
					외부인건비					-	0.00%		
				총 인건비 소계		-		-		-	0.00%		
				연구시설·장비비						-	0.00%		
				연구재료비						-	0.00%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0.00%	TIPA: 직접비의 40% 이내	부적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0.00%		
					회의비					-	0.00%		
					출장비					-	0.00%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	0.00%		
					연구실운영비					-	0.00%		
					연구인력 지원비					-	0.00%		
					그 밖의 비용(위탁 정산 비용)(필수)	-				-	0.00%		
					그 밖의 비용					-	0.00%	TIPA: 인건비의 20% 이내	
				연구활동비 소계		-				-	0.00%		
				연구수당						-	0.00%		부적절
			직접비 소계			-		-		-	0.00%		
			간접비	인력지원비						-	0.00%		
				연구지원비						-	0.00%		
				연구지원비(기술임치비)(필수)		-				-	0.00%		
				성과활용지원비						-	0.00%	TIPA: 직접비의 10% 이내	
				성과활용지원비(기업신용평가비)(필수)		200				200	100.00%		
			간접비 소계			200	100.00%			200	100.00%		부적절
합계						200	100.00%	-	0.00%	200	100.00%		

(단위:천원)

- 기관별연구개발비 (총괄) 작성(주관/공동/위탁)
 - 기관별 모두 작성 (공동/위탁 있는 경우 EXCEL 파일에서 동일하게 작성)
 - 사업비상세(사업비분담내역) 의 기관별 합계가 일치 하도록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 수행기관 별 연구개발비 작성_인건비 (주관/공동/위탁)
-기관 별 각각작성
-참여연구원 전원 기재 필수

TIPA:
참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봉 * 6/12 작성 필요

TIPA: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입력

3-1. 수행기관별 인건비(작성필요)

확인완료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채용구분	직위	연봉 (참여기간 개월 수 기준 작성) (A)	현금계상률 (%) (B)	현물계상률 (%) (C)	미지급계상률 (%)	합 계(A×(B+C)/12/100) 현금	현물	계
주관연구개발기관	0	인건비	기존인력	김씨		수석	60,000	20	12	-	12,000	7,200	19,200
				나씨		책임	70,000	30	12	-	21,000	8400	29,400
				박씨		선임	50,000	20	20		10,000	10000	20,000
				이씨		주임	40,000	20	20		8,000	8,000	16,000
													0
			신규인력	최씨	신규	연구원	30,000	10	10		3,000	3000	6,000
													0
													0
													0
													0
			소 계								54,000	36,600	90,600
			외부인력										0
													0
													0
													0
													0
			소 계								0	0	0
합 계											54,000	36,600	90,600

합계금액은 수행기관별연구개발비에 기재한 인건비 현금,**현물 총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동일

TIPA:
작성하신 총인건비와 참여연구원인건비 총합 동일/비동일 여부